
2017년 금정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목 차

1. 공통공시 총괄	-----	2
2. 예산규모		
②-1 세입예산	-----	3
②-2 세출예산	-----	4
②-3 중기지방재정계획	-----	5
②-4 지역통합재정통계	-----	6
3. 재정여건		
③-1 재정자립도	-----	7
③-2 재정자주도	-----	8
③-3 통합재정수지	-----	9
4. 재정운용계획		
④-1 성인지 예산현황	-----	11
④-2 주민참여예산현황	-----	12
④-3 성과계획서	-----	14
④-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15
④-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16
④-6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	17
④-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17

2017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금정구청장(인)

- ◆ 우리 구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202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663억원)보다 1,461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8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29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142억원입니다.
- ◆ 우리 구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0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8.83%입니다.
- ◆ 우리 구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 대비 살림규모가 작으며, 자체수입의 비중이 낮고 의존 수입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유사지방자치단체 대비 다소 낮은 편입니다.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등 꼭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시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추가세입 발굴 등 세입확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 『정부3.0정보공개⇒예산방/[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예산\)](#)』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 홈페이지 『정부3.0정보공개⇒예산방/[예산편성에바란다](#)』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손세은(☎519-4021)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202	3,098	104	4,663	4,380	283
	세출예산	3,202	3,098	104	4,663	4,380	283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4.09	23.97	0.12	29.1	28.02	1.08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38.83	37.63	1.2	41.14	39.93	1.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	1	0	23	20	3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인구규모,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등)을 반영하여 12개 유형(시(4), 군(4), 자치구(4) 등)의 유사단체로 구분하여 비교

※ 자세한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은 붙임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20,229	301,648	0	14,439	4,14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31,209	242,713	284,375	309,785	320,229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17,866	100%	229,123	100%	270,703	100%	291,479	100%	301,648	100%
지방세	32,514	14.92%	33,870	14.78%	36,302	13.41%	39,045	13.39%	40,880	13.55%
세외수입	25,497	11.70%	16,572	7.23%	17,498	6.46%	18,537	6.36%	17,598	5.83%
지방교부세	5,000	2.30%	5,000	2.18%	5,000	1.85%	5,000	1.72%	5,000	1.66%
조정교부금 등	29,980	13.76%	30,780	13.44%	32,879	12.15%	34,828	11.95%	39,457	13.08%
보조금	124,874	57.32%	133,003	58.05%	169,184	62.50%	181,787	62.37%	184,516	61.17%
지방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9,899	4.32%	9,840	3.63%	12,282	4.21%	14,196	4.7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20,229	301,648	0	14,439	4,14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31,209	242,713	284,375	309,785	320,229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17,866	100%	229,123	100%	270,703	100%	291,479	100%	301,648	100%
일반공공행정	11,078	5.09%	12,103	5.28%	10,669	3.94%	10,162	3.48%	11,021	3.65%
공공질서 및 안전	2,561	1.18%	1,298	0.57%	4,982	1.84%	7,706	2.64%	1,745	0.58%
교육	348	0.16%	629	0.27%	862	0.32%	1,238	0.42%	961	0.32%
문화 및 관광	12,637	5.80%	9,636	4.21%	10,383	3.84%	12,537	4.30%	10,681	3.54%
환경 보호	9,421	4.32%	10,611	4.63%	11,221	4.15%	10,941	3.75%	12,082	4.01%
사회 복지	110,160	50.56%	120,038	52.39%	154,336	57.01%	165,005	56.61%	171,850	56.97%
보건	4,700	2.16%	4,903	2.14%	6,321	2.34%	6,579	2.26%	7,101	2.35%
농림해양수산	3,960	1.82%	5,646	2.47%	3,821	1.41%	2,876	0.99%	3,034	1.01%
산업·중소기업	236	0.11%	167	0.07%	675	0.25%	314	0.11%	493	0.16%
수송 및 교통	6,608	3.03%	6,916	3.02%	4,077	1.51%	5,044	1.73%	9,523	3.16%
국토 및 지역개발	3,182	1.46%	3,035	1.32%	3,609	1.33%	5,535	1.90%	5,673	1.88%
과학기술	0	0%	0	0%	0	0.00%	0	0%	0	0%
예비비	2,616	1.20%	2,311	1.01%	3,319	1.23%	3,759	1.29%	5,167	1.71%
기타	50,358	23.11%	51,831	22.62%	56,427	20.84%	59,782	20.51%	62,317	20.6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금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71,890	370,936	376,268	368,728	387,872	1,875,694	1.10%
자 체 수 입	65,276	66,611	67,702	69,012	70,516	339,117	1.90%
이 전 수 입	270,860	270,631	274,320	264,916	281,988	1,362,715	1.00%
지 방 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755	33,695	34,246	34,801	35,368	173,865	△0.30%
세 출	371,890	370,936	376,268	368,728	387,872	1,875,694	1.10%
경 상 지 출	84,861	84,191	86,289	89,267	91,796	436,404	2.00%
사 업 수 요	287,029	286,745	289,980	279,461	296,076	1,439,291	0.8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금정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310,596	321,322	10,726	3.45
금정구	309,785	320,229	10,444	3.37
출자·출연기관	811	1,093	282	34.7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0분의 10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 ▶ 우리구 출자출연기관(1개) : 금정문화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0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4.09% (19.39%)	301,648 (301,648)	72,675 (58,479)	228,973 (228,973)	0	0 (14,196)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 2016년도 우리 금정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4.9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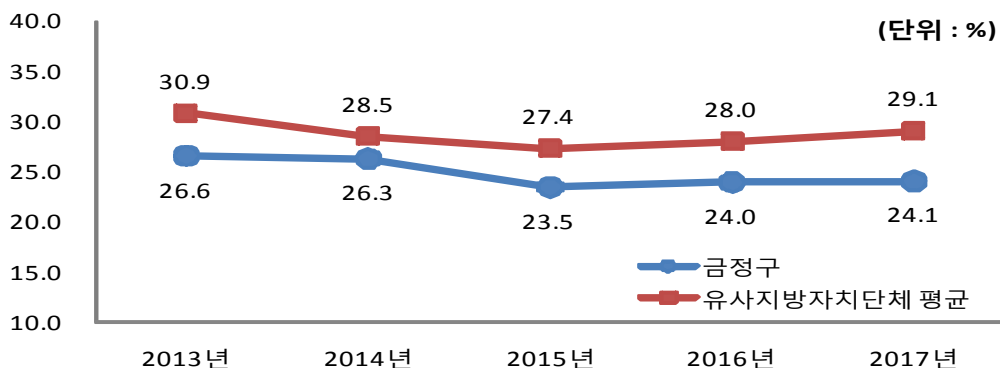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4.95% (17.07%)	343,811 (343,811)	85,793 (58,689)	258,018 (258,018)	0	0 (27,104)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26.63	26.34 (22.02)	23.51 (19.87)	23.97 (19.76)	24.09 (19.39)
최종예산	27.18	24.58 (18.69)	24.37 (18.30)	24.95 (17.07)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 대비 자체세입비중이 낮고 이전재원 비중이 높아 중앙 및 부산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8.8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8.83% (34.12%)	301,648 (301,648)	117,132 (102,936)	184,516 (184,516)	0	0 (14,196)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 2016년도 우리 금정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41.3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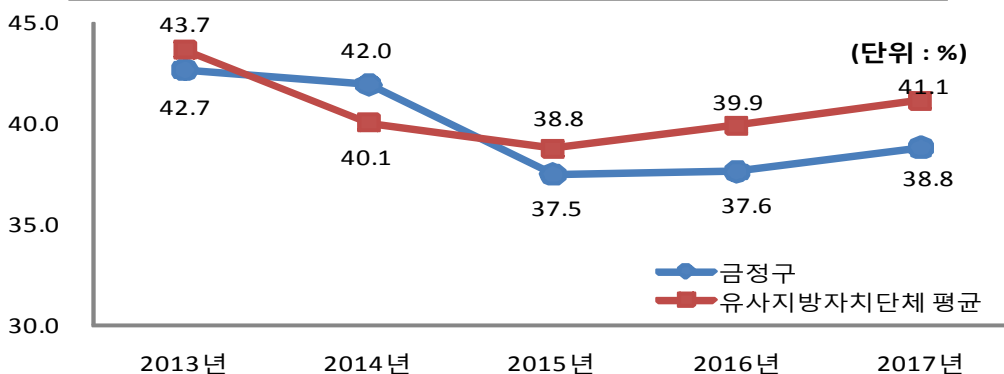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1.34% (33.46%)	343,811 (343,811)	142,141 (115,037)	201,670 (201,670)	0	0 (27,104)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42.68	41.95 (37.63)	37.50 (33.87)	37.63 (33.42)	38.83 (34.12)
최종예산	43.05	40.67 (34.77)	41.41 (35.34)	41.34 (33.46)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주도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자원조달면에서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자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구의 자주재원 비중은 38.8%로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 41.1%대비 재정자주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는 자주재원은 소폭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확대로 보조금 지원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체세입 확충은 한정적이라 보조금 의존도는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93,092	315,922	49	90	41	22,973	315,963	△ 22,871	102
일반회계	287,648	300,936	0	0	0	14,000	300,936	△ 13,289	711
기타 특별회계	5,194	14,419	49	20	△ 29	8,973	14,390	△ 9,196	△ 223
기 금	251	567	0	70	70	0	637	△ 386	△ 386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13,330	△15,474	△15,550	△19,311	△22,871
통합재정수지 2	△40	△384	△113	85	102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금정구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24,777	355,109	55	120	65	30,675	355,174	△30,397	278
일반회계	316,989	336,036	0	0	0	21,970	336,036	△19,047	2,923
기타 특별회계	7,579	18,484	55	20	△35	8,705	18,450	△10,870	△2,166
기 금	209	588	0	100	100	0	688	△479	△479

-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24,176	△21,459	△20,264	△20,978	△30,397
통합재정수지 2	145	1,415	82	263	278

☞ 통합재정수지는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구는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집행잔액, 초과세입 등에서 이월금 및 국소비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금정구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9	11,882
여성정책추진사업	4	3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4	11,75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99

-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eumjeong.go.kr/board/list.geumj?boardId=BBS_0000020&menuCd=DOM_000000101004010000&contentsSid=60 (금정구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예산방/성인지예산서)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금정구는 모델 2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16,086	129	2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29	
총무과	주민센터 강의실 수납장 제작(청룡노포동)	1	신규사업
건설과	우수관로 확장 공사(금성동 247-2 ~ 249-4)	13	"
건설과	인도 설치 요구(오시계로 2 일원)	80	"
공원녹지과	축구 정비 요청(오륜대로 229)	5	"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금샘로 인도정비, 안전펜스 설치 (구서쌍용예가 2단지 ~ 구서여중)	3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eumjeong.go.kr/board/list.geumj?boardId=BBS_0000019&menuCd=DOM_00000101004009000&startPage=1 (금정구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예산방/주민참여예산제)

4-3. 성과계획서

-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금정구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49	153	110	316,086	305,939	10,147
의회사무국	1	1	3	2	983	966	17
기획감사실	1	1	4	6	5,787	4,397	1,391
도시생태추진단	1	1	2	3	2,641	841	1,800
총무국	1	12	43	23	70,604	70,005	599
주민복지국	1	20	58	33	188,112	177,315	10,798
안전도시국	1	11	33	33	34,894	39,081	△4,187
보건소	1	1	4	4	7,877	7,295	582
도서관	1	1	3	3	1,084	2,163	△1,079
문화회관	1	1	3	3	1,421	1,429	△8
주민센터	0	0	0	0	2,682	2,449	233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eumjeong.go.kr/board/list.geumj?boardId=BBS_0000175&menuCd=DOM_000000101004012000&contentsSid=2593 (금정구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예산방/예산공유방)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4.09	38.83	56.97	13.23	65.87	79.0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8	0
	부단체장	41	41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4	243	△4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68	68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0	80	0
	의원국외여비	42	42	0
지방보조금		1,869	1,012	△85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09	909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404	-
공무원 일·숙직비		-	43	-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 불가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6년에 우리 금정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1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디자인형 울타리 설계 및 구매 부적정	21백만원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6년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유사단체 분류 (기초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15개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충남 천안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양시 전북 전주시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포항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경남 (신)창원시	경기 부천시 충북 (신)청주시 경남 김해시
	시-(2) 21개	경기 평택시 경기 김포시 충북 충주시 전남 순천시 경남 양산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경북 경주시	경기 시흥시 경기 안성시 전북 군산시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시 전북 익산시 경남 진주시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전남 여수시 경남 거제시
	시-(3) 19개	경기 군포시 경기 포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목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충남 보령시 경북 김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경북 안동시	경기 오산시 강원 강릉시 충남 논산시 경북 경산시	경기 구리시 강원 삼척시 충남 당진시
	시-(4) 20개	경기 의왕시 강원 속초시 전북 김제시 경북 상주시	경기 동두천시 충남 공주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	경기 과천시 충남 계룡시 전남 광양시 경남 통영시	강원 동해시 전북 정읍시 경북 영주시 경남 사천시	강원 태백시 전북 남원시 경북 영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21개	부산 기장군 경기 양평군 충남 예산군 전남 장흥군 경남 거창군	대구 달성군 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 전남 해남군	인천 강화군 충북 음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무안군	인천 옹진군 충남 부여군 전북 부안군 경북 칠곡군	울산 울주군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함안군
	군-(2) 20개	경기 가평군 충북 진천군 전남 담양군 경북 의성군	경기 연천군 충북 괴산군 전남 화순군 경북 울진군	강원 평창군 충남 금산군 전남 영암군 경남 창녕군	강원 정선군 충남 서천군 전남 완도군 경남 고성군	충북 영동군 충남 태안군 전남 신안군 경남 합천군
	군-(3) 20개	강원 횡성군 강원 고성군 전북 임실군 경북 청도군	강원 영월군 강원 양양군 전북 순창군 경북 성주군	강원 철원군 충북 보은군 전남 보성군 경북 예천군	강원 양구군 충북 옥천군 전남 영광군 경남 하동군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 전남 장성군 경남 함양군
	군-(4) 21개	강원 화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진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산청군	충북 단양군 전남 곡성군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충남 청양군 전남 구례군 경북 청송군 경북 울릉군	전북 진안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양군 경남 의령군	전북 무주군 전남 함평군 경북 영덕군 경남 남해군
자치구	구-(1) 13개	서울 중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북구 서울 양천구 서울 송파구	서울 도봉구 서울 강서구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서울 구로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초구
	구-(2) 12개	서울 종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관악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성동구 서울 금천구	서울 광진구 서울 영등포구
	구-(3) 22개	부산 진구 부산 사상구 인천 중구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동구 인천 남구 광주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대구 북구 인천 연수구 광주 북구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서구
	구-(4) 22개	부산 중구 부산 남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울산 동구	부산 서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울산 북구	부산 동구 부산 연제구 인천 동구 대전 중구	부산 영도구 부산 수영구 인천 계양구 대전 대덕구	부산 동래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울산 중구

※ 2016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